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14. 4. 14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4년 4월 3일

나. 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다. 회부일자 : 2014년 4월 9일 회부

라. 상정일자 : 제181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(2014. 4. 11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국장 김정진)

가. 제안이유

-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직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조사 휴가 일부개정 및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특수경력직공무원 외에 경력직공무원에게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에 대한 연가 가산(안 제18조의2)
 - 재직기간 2년 미만이고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있을시 연가 2일 가산
-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확대(안 제24조제4항 단서)
 -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 부여
-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(안 제24조제14항)
 -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
-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
- 30년 이상 : 20일
-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등 별도 규정 신설 (안 제24조의2)
- 경조사 휴가 대상자 중 사망시 휴가일수 및 휴가대상자 범위 확대(안 별표 3)
 -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: 2일에서 3일로 확대
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: 1일 부여
 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: 1일 부여
-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김 기 영)

-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(대통령령)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소속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신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 시간을 확대하고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.
- 주요내용을 살펴보면
 - ▷ 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 반영
 - 안 제18조의2에 공무원 직종개편에 따른 연가일수 조정사항을 반영하였고,
 - 안 제19조에 임신·출산 또는 자녀양육을 위한 휴직기간 산정시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를 재직기간에 산입하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24조에 모성보호 강화를 위해 임신 후 12주 이내 및 36주 이상 여성공무원에게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부여하도록 하였으며,
 - 안 제25조에 ‘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’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’ 조항을 신설하였음.
 - ▷ 공무원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한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및 특별휴가 신설

- 안 제24조제1항에 자녀 및 그 자녀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일수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개정하고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1일의 특별휴가 일수를 신설하였으며,
 - 안 제24조제14항에 장기재직공무원에 대하여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의 경우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공무원에 대해 각각 20일간의 장기재직 특별휴가를 신설하였음.
 - 그 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함.
- 이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, 소속 공무원의 경조사 휴가일수를 확대하고 특별휴가 조항을 신설하여 직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,
 - 검토결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3제1항에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서울시 및 타 자치구에서 시행중에 있는 경조사 및 장기재직 특별휴가 관련 복무 규정과의 형평성 등을 감안할 때 소속 직원의 사기진작, 휴식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의적절한 개정으로 보여지며,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조문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.
 - 다만 2013년 12월말 기준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1,431명중 10년 이상 재직자인 공무원이 903명¹⁾(63.1%)으로 대상자에 대한 세밀한 현황 파악과 적절한 휴가일정을 안배하여 장기휴가 실시에 따른 업무공백 발생 우려와 대직근무자의 업무하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마련이 요구됨.
 - 참고로 경조사 관련 특별휴가는 서울시 및 11개 자치구²⁾에서, 장기재직 특별휴가는 서울시 및 10개 자치구³⁾에서 우리구의 개정 조례안과 동일한 수준으로 기 시행중에 있음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1) 10년이상 20년미만 : 203명, 20년이상 30년미만 : 533명, 30년이상 : 167명

2) 중, 성동, 동대문, 중랑, 강북, 노원, 동작, 관악, 서초, 강남, 강동구

3) 성동, 성북, 노원, 은평, 서대문, 양천, 강서, 관악, 송파, 강동구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| |
|----------|---------|
| 의안 번호 | 제 282 호 |
|----------|---------|

제출연월일 : 2014. 4.

제 출 자 : 영등포구청장

1. 제안이유

상위법령인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 직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경조사 휴가 일부개정 및 장기재직 공무원에 대하여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를 부여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- 가. 특수경력직공무원 외에 경력직공무원에게도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 경력에 대한 연가 가산(안 제18조의2)
 - 재직기간 2년 미만이고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있을시 연가 2일 가산
- 나.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에 대한 모성보호시간 확대(안 제24조제4항 단서)
 - 임신 후 12주 이내이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인 경우 1일 2시간 부여
- 다. 장기재직 공무원에게 재직기간에 따라 특별휴가 부여(안 제24조제14항)
 - 10년 이상 20년 미만 : 10일
 - 20년 이상 30년 미만 : 20일
 - 30년 이상 : 20일
- 라.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 등 별도 규정 신설(안 제24조의2)
- 마. 경조사 휴가 대상자 중 사망시 휴가일수 및 휴가대상자 범위 확대(안 별표 3)
 -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 : 2일에서 3일로 확대
 -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: 1일 부여
 -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의 사망시 : 1일 부여
- 바.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법률용어 순화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1항, 제7조의3제6항, 제7조의5

나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다. 협의사항

(1) 규제심사 : 해당없음

(2) 부패영향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(3) 성별영향분석평가 : 평가실시(의견없음)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4.2.13.~2014.3.5, 20일간)결과 : 의견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항 중 “의한다”를 “따른다”로 한다.

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사용하여”를 “사용해”로 한다.

제4조제3항 중 “집단、연명(聯名)”을 “집단、연명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발생한”을 “발생하였을”로, “취하여야”를 “하여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생 또는 이의 대비”를 “발생 또는 대비”로, “이에 따른 근무상”을 “근무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하여서는 안된다”를 “해서는 아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비상근무에 관하여”를 “비상근무에”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사무를”을 “개인적인 일을”로, “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”를 “소비해서는 아니 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발생한”을 “발생하였을”로, “기타의”를 “, 그 밖의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”를 “귀청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”로, “복명하여야”를 “결과를 보고 하여야”로 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된”을 “될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「재외공무원복무규정(대통령령)」”을 “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”으로 하며, 같은 항 후단 중 “감독권은”을 “감독권을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된”을 “될”로 한다.

제11조 중 “15일을 한도로”를 “15일의 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2조제1항 중 “근무중”을 “근무 중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”를 “필요한 사항은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「공무원증

규칙(행정안전부령)을 준용한다”를 “「공무원증 규칙」을 준용한다”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해당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“제20조제5항의 규정”을 “제20조제5항”으로 한다.

제18조의2 제목 “(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”을 “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특수경력직공무원”을 “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”으로, “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”를 “공무원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”로 한다.

제19조제1호 중 “1년에 한한다)”를 “1년으로 하되,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한다.

제20조제2항 본문 중 “사람에 대하여 연2회이상”을 “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”으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제29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외의”를 “제29조에 따른 공무 외의”로, “공무원에 대하여는”을 “공무원에게는”으로 하며, “아니한다”를 “아니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으면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 중 “해당연도”를 각각 “해당 연도”로 “한한다”를 “한정한다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 중 “일수는 이를”을 “일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해당연도”를 “해당 연도”로 하고 “15일이상”을 “15일 이상”으로, “15일미만”을 “15일 미만”으로, “소숫점”을 “소수점”으로, “0.5일이상은”을 “0.5일 이상은”으로, “0.5일미만은 절사한다”를 “0.5일 미만은 버린다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부상외의”를 “부상 외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“제22조제1항의 규정”을 “제22조제1항”으로, “병가일수는 이를”을 “병가일수는”으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병가일수는 이를”을 “병가일수는”으로, “아니한다”를 “아니 한다”로 한다.

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“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”를 “산입하지 아니 한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요양을 요하는”을 “요양이 필요한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7일이상일”을 “7일 이상일”로 한다.

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해당할”을 “해당한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 중 “법

률의 규정”을 “법률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47조”를 “제52조”로, 같은 조 제6호 중 “「지방공무원 교육 훈련법 시행령」 제29조”를 “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」 제29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7호 중 “불가능한”을 “불가능 할”로 한다.

제24조제2항 중 “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하여”를 “임신 중인 공무원에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
제24조제6항 중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3항 중 “1월1일”을 “1월 1일”로, “년”을 “연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⑭ 구청장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.

제24조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4조의2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특례)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는 제18조제1항, 제21조제3항·제4항, 제22조제1항·제3항, 제24조제4항·제6항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.

제25조의 제목 “(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”을 “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본문 중 “휴가기간중”을 “휴가기간 중”으로 한다.

제26조 중 “조례에”를 “조례에서”로 한다.

제26조의2의 제목 “(공무외의 국외여행)”을 “(공무 외의 국외여행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공무외의”를 “공무 외의”로 한다.

제30조 중 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조제3항”을 “ 「지방공무원법」 제3조제2항”으로 한다.

제32조 중 “조례 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조례의 시행에”로 한다.

별표 3 사망 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, 비고 2 중 “한한다”를 “한정한다”로 한다.

| | |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
|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2 |
| 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3 |
|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| 1 |
| |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| 1 |

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표 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(제18조의2 관련)

〈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〉

1.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 대상자
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(즉, 호봉 획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
 2.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 연가가산 일수
 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
 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2일 가산
- 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

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휴가기준 (제24조의 2 관련)

1. 휴가일수 계산 등

- 가.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 단위로 계산한다.
- 나.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과 공휴일(토요일을 포함한다)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15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.
- 다.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,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.

2. 연가

- 가.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,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begin{array}{l} \text{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} \\ \text{제7조에 따른} \\ \text{재직기간별 연가일수} \end{array} \times \frac{\text{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} \\ \text{한시임기제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{\text{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}} \times 8$$

- 나.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공제한다.
- 다. 제3호나목에 따른 병가 중 연간 3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병가기간 중에 근무해야 할 시간을 연가에서 공제한다. 다만,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.

3. 병가

- 가.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.
 - 1)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
 - 2) 해당 공무원이 감염병에 걸려 출근 시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
- 나.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·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

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또는 한시임기제공무원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, 제2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아니 한다.

4. 특별휴가

- 가.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으로서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
- 나. 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여성공무원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.
- 다. 수업휴가는 실시하지 아니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|---|
| <p>제2조(선서) 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<u>의한다</u>.</p> <p>③ (생 략)</p> <p>제3조의2(비밀엄수)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<u>사용하여서는</u> 아니 된다.</p> <p>1. ~ 4. (생 략)</p> <p>제4조(근무기강의 확립) ①、② (생 략)</p> <p>③ 공무원(제30조에 따른 공무원은 제외한다)은 <u>집단·연명(聯名)</u>으로 또는 단체의 명의를 사용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반대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수립·집행을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.</p> <p>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에 화재, 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, 숙직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<u>발생한</u>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</p> <p>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·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<u>발생 또는</u> <u>이의 대비</u>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<u>이에</u> 따른 근무상의 필</p> | <p>제2조(선서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<u>따른다</u>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조의2(비밀엄수) ----- ----- ----- <u>사용해</u>-----.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4조(근무기강의 확립) ①、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 ----- <u>집단·연명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7조(당직 및 비상근무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발생하였을</u> ----- -----<u>하여야</u> 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----- <u>발생 또는 대비</u>----- ----- <u>근무상</u>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|---|
| <p>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</p> <p>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 이탈하지 못하며,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.</p> <p>④ 당직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비와 그 밖의 당직 및 <u>비상근무에</u>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제8조(출장공무원)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(이하 “출장공무원”이라 한다)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<u>사무를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아니된다.</u></p> <p>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기일내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<u>발생한</u> 때에는 전화, 전보 <u>기타의</u> 방법으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.</p> <p>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<u>지체없이</u> 소속기관의 장에게 구두 또는 서면으로 <u>복명</u>하여야 한다.</p> | <p>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 <u>해서</u>는 아니 된다.</p> <p>④ ----- ----- <u>비상근무에</u> ----- -----.</p> <p>제8조(출장공무원) ① ----- ----- ----- <u>개인적인</u> <u>일을</u>----- <u>소비</u>해서는 아니 <u>된다.</u></p> <p>② ----- ----- <u>발생</u>하였 <u>을</u> -----, <u>그 밖의</u>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<u>귀청</u>하였을 때에는 <u>지체 없이</u> ----- ----- <u>결과</u>를 <u>보고</u> 하여야 -----.</p> |
| <p>제9조(파견근무) ① (생략)</p> <p>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근무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③ 국외의 정부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</p> | <p>제9조(파견근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-- <u>될</u> ----- -----.</p> <p>③ ----- ----- -----.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을 제외하고는 「재외공무원복무규정(대통령령)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공무원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<u>감독권</u>은 위탁하여야 한다.</p> <p>제10조(겸임근무) ① (생략)</p> <p>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</p> <p>제11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직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<u>15일</u>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.</p> <p>제12조(복장 및 제복)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.</p> <p>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</p> <p>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「공무원증규칙(행정안전부령)」을 준용한다.</p> <p>④ (생략)</p> <p>제18조(연가일수) ① (생략)</p> <p>② <u>해당연도</u>에 결근, 휴직, 정직, 강등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</p> | <p>「재외공무원 복무규정」 ----- ----- 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감독권</u>을 ----- - .</p> <p>제10조(겸임근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 <u>해당하게 될</u> ----- ----- ----- - .</p> <p>제11조(해직된 공무원의 근무) ----- ----- ----- <u>15일</u>의 범위 에서 ----- .</p> <p>제12조(복장 및 제복) ① ----- 근무중 ----- ----- .</p> <p>② ----- ----- <u>필요한 사항은</u> ----- ----- .</p> <p>③ ----- ----- 「공무원증 규칙」을 준용한다.</p> <p>④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18조(연가일수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해당 연도</u>----- 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만 제 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연가 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남은 연가 일수가 있는 공무원 <p>제18조의2(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 제7조제 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4와 같이 한다.</p> <p>제19조(재직기간의 계산 등) 제18조의 재직기간이란 「공무원연금법」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을 말하되, 휴직기간, 정직기간, 직위해제기간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임신, 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(자녀 1명에 대한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는 최초의 1년에 한한다) 2.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| <p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제20조제5항----- ----- ----- <p>제18조의2(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) ----- -----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----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4-----.</p> <p>제19조(재직기간의 계산 등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----- ----- ----- 1년으로 하되, 셋째 자녀부터는 총 휴직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에도 그 휴직기간 전부로 한다) 2. ----- 따른 -----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|
| <p>3. (생략)</p> <p>제20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(생략)</p> <p>② 제18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게 대하여 연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. 다만,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<u>공무외의</u> 국외여행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<u>아니한다</u>.</p> <p>③ (생략)</p> <p>④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<u>없는 한</u>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.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<u>해당연도</u>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<u>해당연도</u>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. 이 경우 다음 연도의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에 <u>한한다</u>.</p> <p>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<u>결근일수</u>·<u>정직일수</u>·<u>직위해제일수</u> 및 강등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<u>일수는</u>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.</p> <p>②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휴직은 <u>해당연도</u>의 휴직기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연가일수를 월할 계산한다. 이 경우 휴직</p> | <p>3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20조(연가계획 및 허가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사람에게는 연 2회 이상</u>----- -----, 제29조에 따른 공무 외의----- ----- 공무원에게는----- <u>아니 한다</u>.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 <p>④ ----- ----- --- <u>없으면</u> -----.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<u>해당 연도</u>----- ----- ----- ----- <u>해당 연도</u>----- ----- ----- <u>한정한다</u>.</p> <p>제21조(연가일수에서의 공제) ① ----- ----- ----- -----<u>일수는</u>----- -----.</p> <p>② ----- ----- <u>해당 연도</u>----- ----- ----- <u>15일 이상</u>-----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<u>신설</u></p> <p>⑤ (생략)</p> <p>⑥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「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」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8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 <p>⑦ ~ ⑫ (생략)</p> <p>⑬ 만 4세 이하(매년 1월1일 기준)의 자녀를 둔 여성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년 5일의 범위에서 부모휴가를 얻을 수 있다.</p> <p><u>신설</u></p> <p><u>신설</u></p> | <p><u>임신 후 12주 이내에 있거나 임신 후 36주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.</u></p> <p>⑤ (현행과 같음)</p> <p>⑥ ----- 따른 -----</p> <p>⑦ ~ ⑫ (현행과 같음)</p> <p>⑬ ----- 1월 1일 ----- 연 -----</p> <p>⑭ <u>구청장은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,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</u></p> <p><u>제24조의2(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)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휴가는 제18조제1항, 제21조제3항·제4항, 제22조제1항·제3항, 제24조제4항·제6항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.</u></p> |

| 현행 | 개정안 |
|---|---|
| <p>제25조(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 <u>휴가기간중의</u>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 다만,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</p> | <p>제25조(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) <u>휴가기간 중의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|
| <p>제26조(휴가기간의 초과) 이 <u>조례에</u> 정한 휴가의 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국으로 본다.</p> | <p>제26조(휴가기간의 초과) -- <u>조례에서</u> ----- -----.</p> |
| <p>제26조의2(공무외의 국외여행) 공무원 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<u>공무외의</u>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.</p> | <p>제26조의2(공무 외의 국외여행) ----- ----- <u>공무 외의</u> ----- -----.</p> |
| <p>제30조(공무원의 범위) 「<u>지방공무원법</u>」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2. (생략)</p> | <p>제30조(공무원의 범위) 「<u>지방공무원법</u>」 제3조제2항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</p> |
| <p>제32조(시행규칙) 이 <u>조례</u>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</p> | <p>제32조(시행규칙) -- <u>조례의</u> 시행에 -- ----- -.</p> |

| 연 행 | 개 정 안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--|--|----------|-----|----|----|---|----|---|----------------|---|----|-----|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|-----|-----|----|----|---|----|---|----------------|---|----|-----|---|----|----|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|----------|
| <p>[별표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일 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결혼</td> <td>본인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자녀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출산</td> <td>배우자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입양</td> <td>본인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4">사망</td> <td>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 <td><u>2</u></td> </tr> <tr> <td>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</u></td> <td><u>1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.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 2.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<u>한한다</u>.</p> | 구 분 | 대 상 | 일 수 | 결혼 | 본인 | 5 | 자녀 | 1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 | 출산 | 배우자 | 5 | 입양 | 본인 | 20 | 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2 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<u>2</u> | 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</u> | <u>1</u> | <p>[별표3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조사별 휴가일수표(제24조제1항 관련)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width: 10%;">구 분</th> <th style="width: 70%;">대 상</th> <th style="width: 20%;">일 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rowspan="3">결혼</td> <td>본인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자녀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</td> <td>1</td> </tr> <tr> <td>출산</td> <td>배우자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입양</td> <td>본인</td> <td>20</td> </tr> <tr> <td rowspan="5">사망</td> <td>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</td> <td>5</td> </tr> <tr> <td>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</td> <td>2</td> </tr> <tr> <td>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</td> <td><u>3</u></td> </tr> <tr> <td>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</td> <td><u>1</u></td> </tr> <tr> <td><u>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</td> <td><u>1</u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비고 : 1. 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. 2. 입양은 「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」에 따른 입양에 <u>한정한다</u>.</p> | 구 분 | 대 상 | 일 수 | 결혼 | 본인 | 5 | 자녀 | 1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 | 출산 | 배우자 | 5 | 입양 | 본인 | 20 | 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2 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<u>3</u> | 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 | <u>1</u> | <u>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 | <u>1</u> |
| 구 분 | 대 상 | 일 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결혼 | 본인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자녀 | 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출산 | 배우자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입양 | 본인 | 2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<u>2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 자매</u> | <u>1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구 분 | 대 상 | 일 수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결혼 | 본인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자녀 | 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| 1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출산 | 배우자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입양 | 본인 | 20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사망 | 배우자,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| 5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·외조부모 | 2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| <u>3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u>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 | <u>1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| | <u>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</u> | <u>1</u>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 |

| 연 행 | 개 정 안 |
|--|--|
| <p>[별표4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(제18조의2 관련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></p> <p>1. <u>민간 경력</u> 인정 대상자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2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 으로 인정되는 자 (즉, 호봉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</p> <p>2. <u>민간 경력별</u> 연가가산 일수 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 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2일 가산 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</p> </div> | <p>[별표 4]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 (제18조의2 관련)</p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10px; margin-top: 10px;"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 연가가산 방법></p> <p>1. <u>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</u> 인정 대상자 「지방공무원 보수규정」 별표 2(일반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)에서 유사경력으로 인정되는 자 (즉, 호봉 확정시 인정된 유사경력)</p> <p>2. <u>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별</u> 연가가산 일수 - 유사경력이 없는 경우 : 가산안함 - 유사경력이 있는 경우 : 2일 가산 ※ 재직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는 가산하지 않음</p> </div> |